



외교부

외 교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급]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안내

수신 : 전 재외공관장

사본 : 각 실,국(과,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해외입국관리팀장), 질병관리청장(검역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신북방통상총괄과장, 미주통상과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제협력과장), 국토교통부장관(국제항공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차관보, 1차관, 2차관, 장관, 청외교, 청안보, 청위기상황

발신 : 외교부장관(영사서비스과장)

연호 : 영사서비스과-75236(2020.12.29.)

1. 연호 관련,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30. 및 1.4.자 별첨 공문을 통해 영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동 바이러스 발생 국가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음.

○ 주요 사항

-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절차)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를 지정하여 외교부에 공문 통보 시, 해당 재외공관은 통보일 익일부터 3주간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 상기 기간 중 신규 발급은 중지되나, 중지 시행일 전날까지 이미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효력 유지

- (공통 예외 사유)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출장 후 귀국 공무원**

* △본인의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식 참석의 경우, 최대 7일 간의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은 예외 사유로 불인정

** (대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대표, 국무위원 및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수행직원 포함) /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수행직원 포함)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함.

※ 상기 공통 예외 사유는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조치를 이미 시행 중인 영국, 남아공에도 동일 적용

- (추가 예외 사유) △신속통로 6개국(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UAE) 및 필수입국 합의국(독일), △미국은 아래 범위 내에서 추가 예외 적용
 - (신속통로 국가 및 필수입국 합의국) 협정 또는 합의 내용에 한해 예외 적용(상호주의를 전제로 격리면제 유지)
 - (미국) 신속통로 국가에 준하여 주요 기업인에 대한 예외 적용(상세 내용은 아래 항목 2. 참조)

2. (아래 39개 국가·지역 관할 공관) 이와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자 별첨 공문을 통해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절차 적용 대상 국가·지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온바, 귀관 업무에 적용 바람.

- 대상 국가·지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만, 덴마크, 독일, 레바논,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몰타, 미국, 베트남, 벨기에, 브라질,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요르단,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일본, 잠비아, 중국, 칠레, 캐나다, 태국, 터키, 파키스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UAE

※ 방대본 공문 접수 후 공관에서 보고한 2개국(그리스, 사이프러스) 포함(중수본 및 방대본 측과 협의 완료)

- 발급 중지 기간 : 2021.1.5.~1.25.(추후 연장 가능)

※ 영국 및 남아공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2021.1.17.까지 적용(추후 연장 가능)

-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중국, UAE, 독일) 신속통로 및 필수입국합의 국가인바, 협정 또는 합의 내용으로 예외 적용(상호주의를 전제로 격리면제 유지)
- (미국) 신속통로 국가에 준하여 주요 기업인*에 대한 격리면제 중지 예외 적용
 - * 임원급, 엔지니어 등 소수 필수인력(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또는 확인서 제출 必)으로서 아래 격리면제서 발급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격리면제서 발급 인정 사유

- 계약 및 약정 체결(체류기간 7일 이내, 계약 및 약정 초안 사본 제출 必)
- 신규 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증빙서류 제출 必)
- * 실제 설치 작업뿐만 아니라 기술 지도 및 이전도 포함
 - 그 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하여 해당 심사부처가 격리면제를 통한 업무 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

- 해당 주한공관에는 필요 시 지역과에서 통보 예정이며, 귀관에서는 공관 홈페이지 공지, 필요 시 귀 주재국 측 통보 등 적의 안내 바람.

